

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(제6조 관련)

구분			산정방식
지방세	보통세	취 득 세	선형회귀모델($Y_t=a+bt$)
		등록면허세	선형회귀모델($Y_t=a+bt$)
		레 저 세	전전년도 징수실적 $\times$ 연평균 증가율
		재 산 세	선형회귀모델($Y_t=a+bt$)
		담배소비세	선형회귀모델($Y_t=a+bt$)
		주 민 세	선형회귀모델($Y_t=a+bt$)
		지방소득세	선형회귀모델($Y_t=a+bt$)
		지방소비세	지방자치단체별 교부(예정) 금액 ※ 지방자치단체 순수 수입분만 해당한다.
		자동차세	전전년도 징수실적 $\times$ 연평균 증가율 ※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은 제외한다.
	목적세		< 삭 제 >
경상세외수입 (사용료, 수수료, 재산임대수입, 이자 수입, 사업수입)			$T_t = \left\{ \sum_{t=1}^3 (a_t + b_t + c_t + d_t + e_t) \right\} \div 3$ [a: 사용료수입액, b: 수수료수입액, c: 재산임대수입액, d: 이자수입 액, e: 사업수입액] ※ 사업수입액 중 청산금수입, 매각 사업수입, 배당금수입은 제외한다.
시·군 조정교부금(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),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시·군 배분금액, 시·도세 징수교부금, 재정 특례보전금,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액			해당 연도 시·도세 추계액 등을 기초로 산정
부동산교부세			지방자치단체별 교부(예정) 금액

비고

1. Y: 지방세수, t: 해당 연도(1, 2, ..., t)
2. 세목별·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법을 보정 적용할 수 있다.
3. 지방세 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및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교
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